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
- 강서구 오정로 -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의안번호 : 제1652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 출 일 : 2024년 2월 5일
- 라. 회 부 일 : 2024년 2월 7일

2. 입안사유

- 대상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(3기 신도시) 개발로 인해 방화대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'오정로'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하고자 함

3. 안건내용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대로	2	가	30.5	주간선 도로	557	오쇠동 147-7	오쇠동 180-5	일반 도로	-	-	하수도 중복결정 (841㎡)
당초	중로	2	338	15	집산 도로	655	외발산동 288-8	공항동 401-24	일반 도로	-	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(1991.7.22.)	
변경	대로	1	338	36.5	주간선 도로	968	외발산동 423-12	공항동 445-1	일반 도로	-	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(1991.7.22.)	철도 중복결정 (909㎡) 공항 중복결정 (48,269.6㎡)

○ 세부시설조성계획(도로) 결정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신설	-	대로 2-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설 - 폭원 : 30.5m - 연장 : 557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오정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 변경
변경	중로 2-338	대로 1-33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형 변경 • 폭원 변경 - 당초 : 15m - 변경 : 36.5m • 연장 변경 - 당초 : 655m - 변경 : 968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오정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 변경

4.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용도지역·지구 : 자연녹지지역, 중요시설물보호지구(공항)
- 기 타 : 개발제한구역, 공항(김포공항), 철도(대곡소사선), 하수도, 도로

5. 주민 의견 청취 사항

- 열람기간 : 2023. 8. 31. ~ 9. 14.(14일간)
- 게재신문 : 서울경제, 서울신문
- 열람장소 : 강서구 도시계획과
- 접수의견 : 2건

제출인	제출의견	조치계획	반영여부
안○○ (오쇠동 169-3)	○ 본인소유토지(오쇠동 169-3)와 오정로를연결 할 수 있는 고리울천 상 교량 설치 및 농로가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도로계획 변경 요청	○ 고리울천까지의 도로 확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, 본 도로 사용 형태 및 접속 여부 등 현황을 고려하여 부체도로를 설계하였음	미반영
권○○ 권○○ 오○○ (신영가설)	○ 오쇠동 175-4번지 공동명의 분할 사용 토지의 편입 배제 요청 ※ 지적: 3,213㎡, 편입면적: 1,070㎡	○ 도로를 확장하며 주변 토지와 의 단차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진출입을 위한 부체도로를 설계하였으며, 향후 실시설계 시 편입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겠음	미반영

6. 강서구의회 의견청취

가. 일 시 : 2023. 09. 11.

나. 결 과 : 원안채택

7.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가. 일 시 : 2023. 11. 30.

나. 결 과 : 원안동의

8.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협의부서 (기관)	검토의견	조치계획	반영여부
강서구의회	○ 외발산사거리-메이필드사거리간 교통성 평가의 서비스 등급이 FF이므로,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,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	○ 오정로상행단보도를 '스테거드횡단보도' 형식으로 변경하고 신호운영계획을 보완, 교차로 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를 개선하였음	반영
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	○ 도로구역결정(변경) 과 관련하여 강서 IC 교차로 일대 도로 시설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	○ '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' 수립('21.2.) 시 정합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, ○ 이후 고속도로의 강서IC 접속 계획이 변경(방화대로→오정로)되어 해당 교차로에 대한 정합성 검토는 '광명~서울 고속도로' 사업시행자 소관사항이나 검토하여 반영하겠음	부분 반영
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	○ 도로 일부 구역이 '김포공항 대중골프장'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조건으로 조성된 대체녹지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대체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행정사항을 시설 결정 전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.(관리계획규정 제29조, 제34조)	○ 해당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(광역도로)에 해당하나, ○ 대체녹지 관련 '김포공항 대중골프장'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별도 협의 진행 중으로 대체녹지확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토교통부(녹색도시과)와 사전 절차를 협의하겠음	부분 반영
한국공항공사	○ LH공사에서 대체녹지조성*을 완료할 경우, 오정로 확장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(제척 27,500m ²) 가능 * 대체부지 인정조건으로 LH에서 (주)구성 환경 폐기물 처리 후 대체녹지조성	○ 폐기물 처리 관련 기 협의중인 조건 사항에 대해 협의 완료 후 관련 절차 이행하겠음	부분 반영

협의부서 (기관)	검토의견	조치계획	반영여부
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	○ 「광명~서울 고속도로」의 강서IC RAMP 등 오정로확장사업과연계가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및 서서울고속도로(주)와 사전 협의 필요	○ 「광명~서울 고속도로」의 강서IC RAMP 등 오정로확장사업과연계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서서울고속도로(주)와 협의하겠음	반영
	○ 광명~서울 고속도로 도로계획(강서IC) 반영 필요	○ 강서IC 변경 전 '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' 수립('21.2)으로 [오정로 확장사업(4차선→8차선)]이 선확정되었으며, 강서IC 계획이 최대한 반영토록 별도 협의하겠음	반영

9. 기 타

가. 자원조달계획

- 자금조달방안 :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0%

(단위 : 억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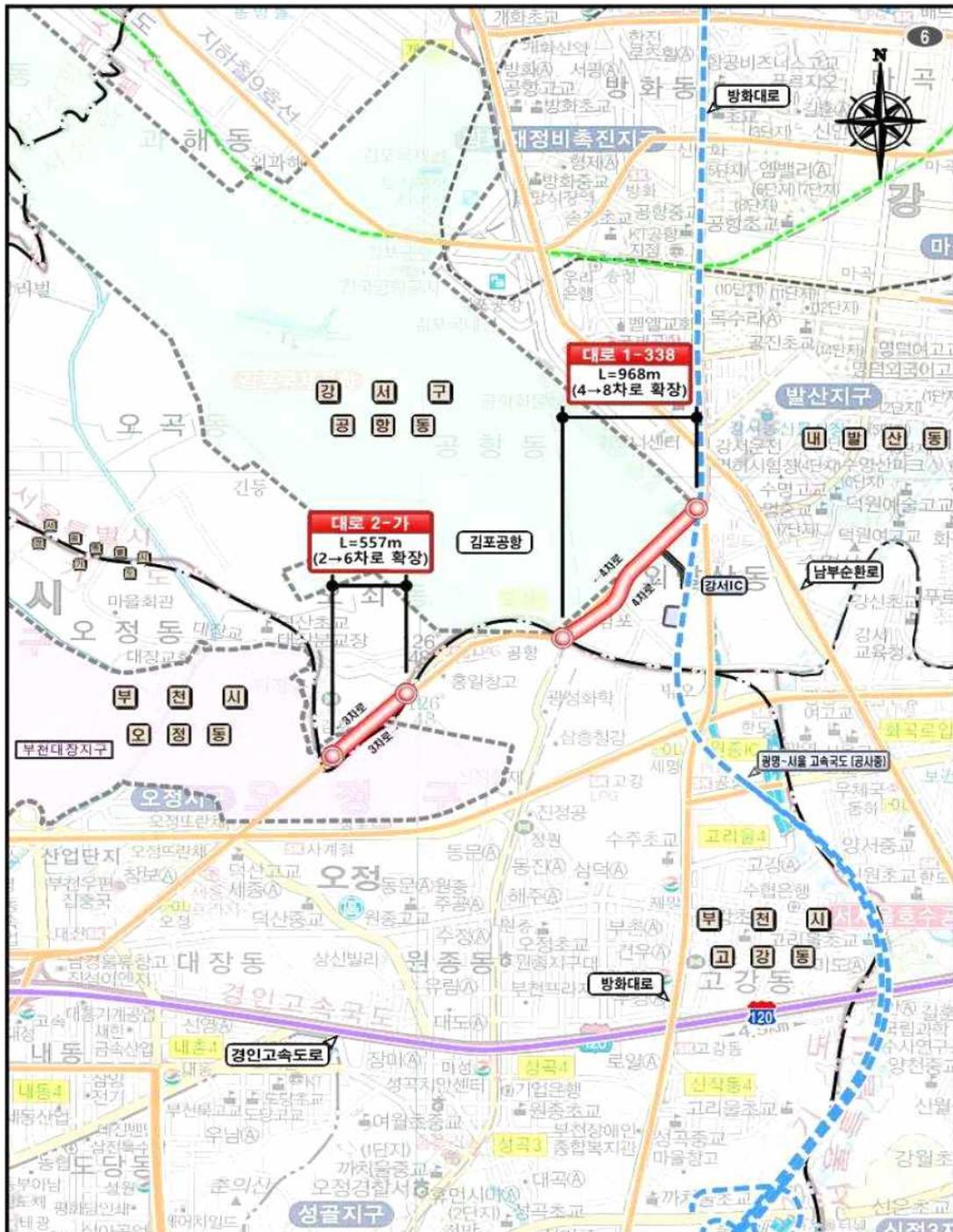
구 분		계	2024	2025	2026	2027년 이후	비고
총사업비	합 계	516	51	181	181	103	
	공사비	142	14	50	50	28	
	보상비	335	34	117	117	67	
	부대비	14	1	5	5	3	
	예비비	25	2	9	9	5	

○ 주요추진경위

- '20.05.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
- '21.02. 부천대장·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
- '21.11.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
- '23.08.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
- '23.08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요청(LH공사 → 강서구)

- '23.08.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
- '23.09. 구의회 의견청취(원안채택)
- '23.11.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원안동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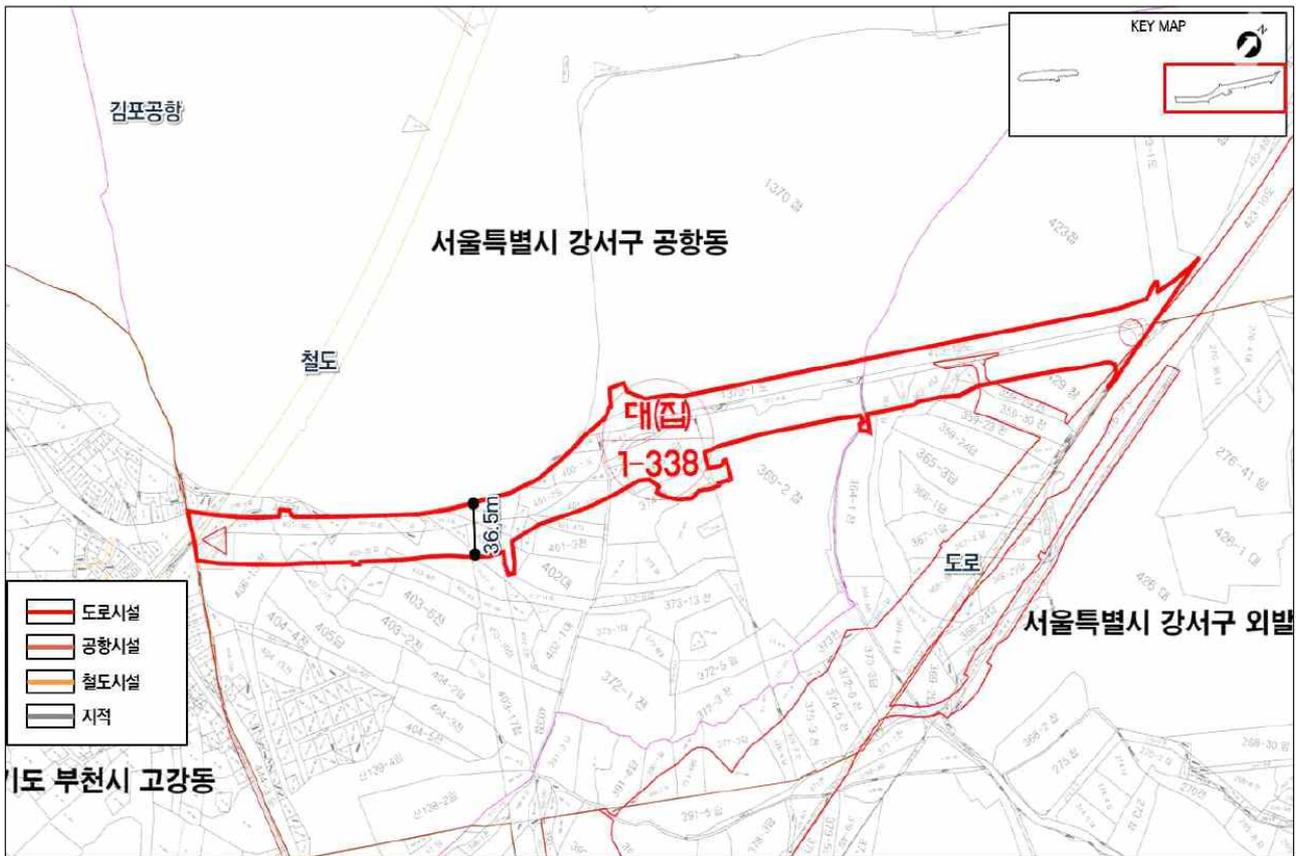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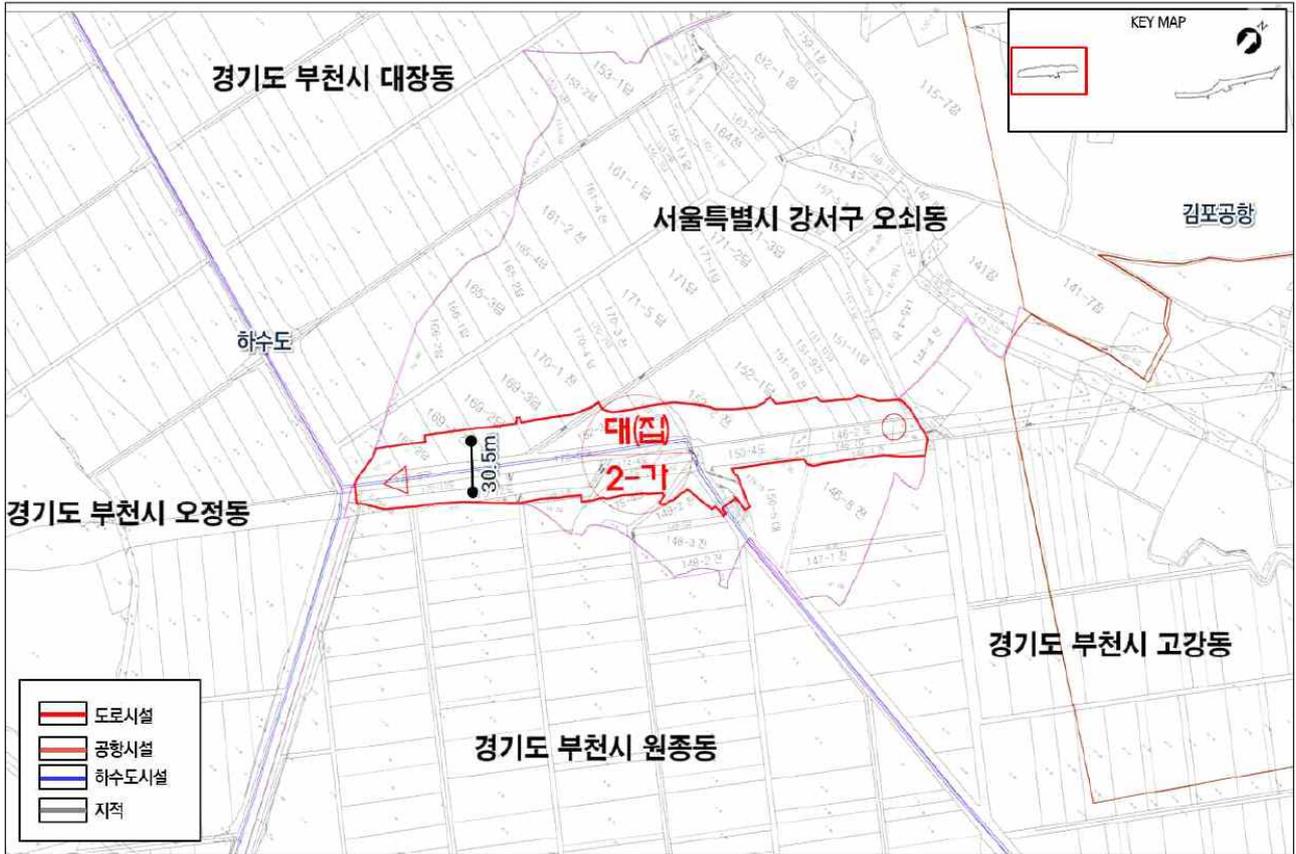
□ 위치도



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(안)





9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(이하, '의견청취안)」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(3기 신도시) 개발로 인해 방화대로에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립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근거하여 '강서구 오정로' 확장공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,
- '강서구 오정로'를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(변경)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실시하는 것으로, '24.2.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'24.2.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임

< '강서구 오정로' 확장사업 위치 >



< '강서구 오정로' 확장사업 개요 >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신설	대로	2	가	30.5m	주간선 도로	557	오쇠동 147-7	오쇠동 180-5	일반 도로	-	-	하수도 중복결정 (841㎡)
당초	중로	2	338	15m	집산 도로	655	외발산동 288-8	공항동 401-24	일반 도로	-	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(1991.7.22.)	
변경	대로	1	338	36.5m	주간선 도로	968	외발산동 423-12	공항동 445-1	일반 도로	-	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(1991.7.22.)	철도 중복결정 (909㎡) 공항 중복결정 (48,269.6㎡)

나. 검토 내용

“제출 경위”

- 이번 의견청취안 사업 대상지인 ‘강서구 오정로’는 서울시 구간 1.53km에 해당하는 확장공사 사업으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(3기 신도시) 조성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2027년 대비 교통량이 평균 약 7,000대 증가할 것으로 예측¹⁾됨

〈 ‘강서구 오정로’ 연도별 교통량 예측 〉

구 분		승용차		버스		소형화물차				중형화물차				대형화물차				합계
		1종	2종	3종	4종	5종	6종	7종	8종	9종	10종	11종	12종					
대로2-가 (2→6차로)	2027년	27,456	886	3,027	483	287	227	7	0	0	15	0	6	32,394				
	2030년	33,810	1,091	3,727	594	353	280	9	0	0	18	0	7	39,889				
	2036년	32,619	1,052	3,596	573	341	270	9	0	0	17	0	7	38,484				
	2046년	30,412	981	3,353	535	318	252	8	0	0	16	0	6	35,881				
대로1-338 (4→8차로)	2027년	37,952	1,225	4,184	667	396	314	10	0	0	20	0	8	44,776				
	2030년	43,604	1,407	4,807	767	456	361	12	0	0	23	0	9	51,446				
	2036년	42,004	1,355	4,630	738	439	347	11	0	0	22	0	9	49,555				
	2046년	38,823	1,253	4,280	682	406	321	10	0	0	21	0	8	45,804				

※ 교통량 증가 예측 결과 : - 대로2-가 : '27년 32,394대 '30년 39,889대 (7,495대 증가)
 - 대로1-338 : '27년 44,776대 '30년 51,446대 (6,670대 증가)

- 이번 강서구 오정로 확장공사 사업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, ‘광역교통법’)」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도시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도로 노선의 교통수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으로써,

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제7조의2(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)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

1)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기간은 2020.5월~2029.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, 해당 교통량 증가 예측 결과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의 준공 시기 전후를 비교한 것임

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"대규모 개발사업"이라 한다)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·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2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3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
4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9조(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) ③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·분석에 관한 사항
- 1의2.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
2. 교통시설의 개선·확충계획에 관한 사항
3. 환승시설의 개선·확충계획에 관한 사항
4.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5.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'강서구 오정로' 확장공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, '국토계획법」)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을 위해 「국토계획법」 제28조 제6항 및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의견 청취안을 실시하고자 함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30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시·도지사가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(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)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

포함할 수 있다)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시·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**. 다만,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(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**도로중 주간선도로**(시·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·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·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“대상지 현황 및 공사개요”

- ‘강서구 오정로’ 확장공사 사업은 강서구 오쇠동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경계부터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교차로까지²⁾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6억 원(사업시행자 LH 100%), 연장 1.53km, 폭원 30.5~36.5m (6~8차로)로 계획³⁾되었음
- 오정로 노선 구간의 경사 평균은 0.67°로 완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, 생태자연 현황은 생태자연도상 대부분 3등급지역으로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,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총 157필지로 전 18.4%, 답 15.95%, 임야 1.71%, 도로 25.57%,

2)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167-1 외 374필지(전체면적 132,272.6㎡)

구분	합계	경기도 부천시		서울시 강서구			비고
		고강동	오쇠동	공향동	외발산동	계	
편입면적	132,272.6	47,433.0	36,570.0	34,604.4	13,665.2	84,839.6	

※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강서구 오쇠동 142-6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포함하여 결정함

3) 총연장 2.56km (서울시 1.53km, 경기도 1.03km)
총사업비 860억 원 (서울시 516억 원, 경기도 344억 원)

기타 38.37%로 확인되고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은 총 157필지로 사유지 50필지 39.11%, 국유지 93필지 47.31%, 공유지 14필지 13.58%로 조사됨

〈 ‘강서구 오정로’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〉

구 분	계	전	답	임야	도로	기타
필지수(개)	157	27	30	6	31	63
편입면적(m ²)	85,395.6	15,711.0	13,618.0	1,462.0	21,833.1	32,771.5
구성비(%)	100.0	18.4	15.95	1.71	25.57	38.37

〈 ‘강서구 오정로’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〉

구 분	계	사유지	소계	국·공유지		비고
				국유지	공유지	
필지수(개)	157	50	107	93	14	
편입면적(m ²)	85,395.6	33,398.9	51,996.7	40,403.5	11,593.2	
구성비(%)	100.0	39.11%	60.89%	47.31%	13.58%	

〈 강서구 오정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도 〉



- 이번 확장공사 사업을 통해 오정로의 폭원이 기존 15m에서 30.5 ~36.5m로 확장되고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, 도시계획시설규칙)」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규모가 중로에서 대로로 변경될 계획임

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

제9조(도로의 구분)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2. 규모별 구분

가. 광로

- (1) 1류 :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
- (2) 2류 :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
- (3) 3류 :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

나. 대로

- (1) 1류 :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**
- (2) 2류 :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**
- (3) 3류 :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

다. 중로

- (1) 1류 :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
- (2) 2류 :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**
- (3) 3류 :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

라. 소로

- (1) 1류 :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
- (2) 2류 :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
- (3) 3류 : 폭 8미터 미만인 도로

“검토사항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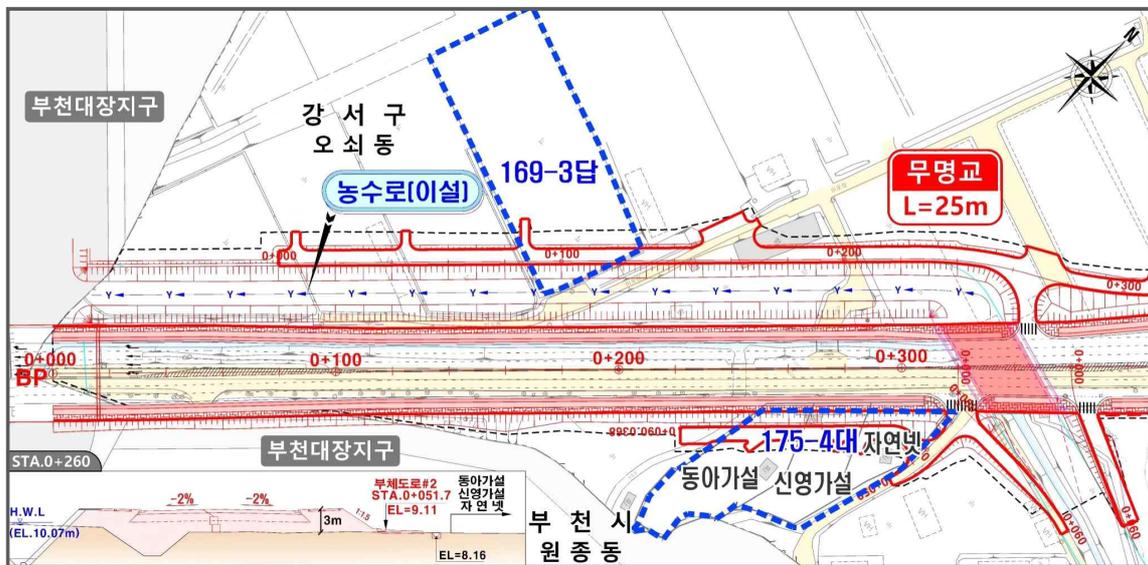
- 이번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의견을 검토해보면 아래의 3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음

① 토지 편입과 도로 접속 문제

- ‘강서구 오정로’ 확장에 따라 기존의 농로가 막다른 길이 될 우려가 있는 구간(강서구 오쇠동 169-3) 및 주변 토지와의 단차 발생 등이 우려되는 구간(강서구 오쇠동 175-4)에 대하여,

-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해당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 사용 및 접속부에 대한 부체도로⁴⁾의 설계를 통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조치계획안을 마련함
- 기존에 설치되어 이용 중인 도로와 농수로의 위치 및 편입 계획된 주변 토지 및 관련 구조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도로 진·출입 편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부체도로 형태 및 접속부의 설계·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

< 강서구 오쇠동 169-3답, 175-4대 토지 위치도 >



② 교통 서비스 등급 상향 대책

-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외발산사거리-메이필드사거리 간 교통성평가 서비스 등급이 당초 F에서 FF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
-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교통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통 신호 운영 체계의 변경 및 스테거드횡단보도⁵⁾ 설치를

4) 부체도로 :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그것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설하는 도로

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

- 대안으로 제시한 스테거드횡단보도는 예각교차로의 직진 차로에 대한 안전성 증진을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, 해당 교차로는 5지 교차로이면서 예각 교차로로서 교통 신호 운영이 복잡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충분한 시거⁶⁾확보가 가능하도록 교통안전시설의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음

< 메이필드호텔 앞 스테거드 횡단보도 적용 시뮬레이션 >

구분	당초안 (교차로 개선)	보완안 (스테거드횡단보도 추가)
차로운영	<p>차로 확장부분 차로운영 개선</p>	<p>차로 확장부분 차로운영 개선 스테거드횡단보도</p>
교차로 지체도	109.4 초/대 (LOS F)	90.4 초/대 (LOS E, 감 19.0초/대)

③ 도로 확장에 따른 대체 녹지면적 확보

- ‘강서구 오정로’ 확장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구역에 ‘김포 공항 대중골프장’의 개발 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조건으로 조성된

5) 행정안전부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, 2022.1., p.140
 횡단보도는 「도로교통법」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, 보행자 횡단을 위해 적용 가능한 횡단시설은 다음과 같음

- (1) **횡단보도** :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
- (2) **대각선횡단보도** :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놓인 횡단보도 외에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치된 시설
- (3) **스테거드 횡단보도** : 2단 횡단보도라고도 하며,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 시간의 주기를 짧게 위해 도로중앙에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교통섬을 설치하여 2회에 나누어 횡단하도록 설치하는 시설
- (4) **고원식 횡단보도** :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, 보행로의 높이에 맞게 차도를 높여 만든 것으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

6) 시거(視距) : 운전자가 자동차 진행 방향의 전방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 정지하거나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 수 있는 길이를 의미

대체녹지가 포함되어 도로 확장 시 대체녹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므로,

- 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」 제29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대체녹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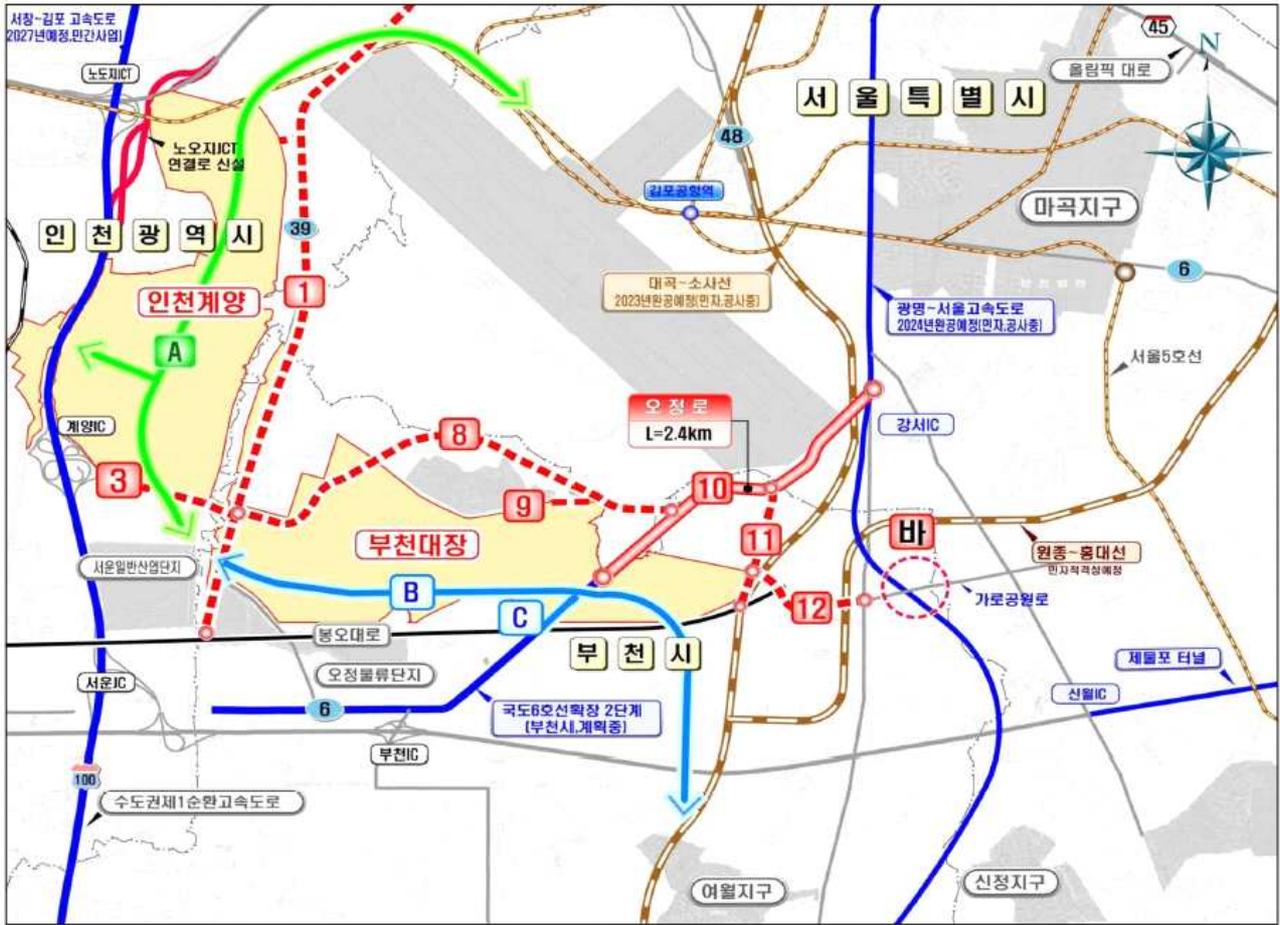
제29조(경미한 변경의 보고)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 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
2. 도시·군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의 변경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감소
 - 나.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(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). 다만, 증가되는 면적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다. 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부지 내에서의 건축물 구조 및 위치 변경. 단,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관리계획 승인 당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배하거나,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·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34조(훼손 저감대책의 강구) ② 중앙심사 및 지방심사를 함에 있어, 입지대상시설이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훼손 저감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할 시·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시설, 재해·위험 방지시설, 조경시설, 완충녹지 등의 설치 등 필요한 훼손 저감대책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다. 종합 의견

- 이번 의견청취안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,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근거한 ‘강서구 오정로’ 확장공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(변경)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량 분산 및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번에 추진되는 ‘강서구 오정로’ 확장공사 사업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,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며, 인근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 간 접근성 및 이동성 제고를 한다는 점에서, 그 법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
- 다만, 이번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지역주민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, 도로 확장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도로와 농수로의 위치, 구조물 현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, 도로 진·출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체도로의 형태 및 접속부의 면밀한 설계·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음
- 스테거드횡단보도의 설치로 예각교차로의 직진 차로에 대한 안전성 증진 및 교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 측면은 이해가 되나, 스테 거드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는 특히 교통 신호 운영이 복잡하므로,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교통시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
- 마지막으로, ‘강서구 오정로’ 확장에 따라 대체 녹지가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대체 녹지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

구분	사업명	연장(km)	차로수	시행시기	시행주체
1	국도39호선(벌말로) 확장	8.0	4 → 8	2026년	사업시행자
3	경명대로 확장	1.0	4~6 → 8	2026년	사업시행자
8	경명대로 신설	3.8	4~8	2026년	사업시행자
9	대장안지구 연결도로	0.2	4	2026년	사업시행자
10	오정로 확장	2.4	2,4 → 6,8	2026년	사업시행자
11	소사로 확장	0.9	2 → 4	2026년	사업시행자
12	고강IC 연결도로신설	0.9	4	2026년	사업시행자
A	S-BRT 신설 (김포공항역~박촌역~대장지구)	9.0	-	2026년	사업시행자
B	S-BRT 신설 (계양지구~대장지구~부촌종합운동장역)	8.0	-	2026년	사업시행자
C	청라~강서간 BRT 연계 (봉오대로~사업지내부)	0.6	-	2026년	사업시행자
바	고강IC 신설 (광명서울고속도로~가로공원길)	-	2	2026년	사업시행자

※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 상 시행시기이며, 각 사업 별로 인허가 중에 변경될 수 있음